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8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김기표 · 박민규
박상혁 · 홍기원 · 안태준
김주영 · 이정문 · 박정현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,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.

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,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소

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1조 및 제37조).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
도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9조제1항
제4호 또는 제5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
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
일괄입찰
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8조제2호
또는 제3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
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

제37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
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)

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)하는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 용역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(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 감리는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</p> <p>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</p>

제3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의2. (생략)

<신설>

5. ~ 7. (생략)

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

제37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
4의3. 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를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

5. ~ 7. (현행과 같음)